

장학생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서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이하 “대구대학교”라 함)과 (주)민커뮤니케이션(이하 “민커뮤니케이션”이라 함)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민커뮤니케이션”간의 [호혜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잠재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본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류 협력하고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대구대학교”는 멀티미디어공학 전공에 재학중인 게임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민커뮤니케이션”에 장학생으로 추천함으로써 잠재적 우수 인력 확보에 협조를 한다.
2. “민커뮤니케이션”은 “대구대학교”에서 선발한 우수 인력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 및 협조 한다.

제3조 (조문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본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이하 “정보제공당사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을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해제, 해지, 만료 기타 사유로 본 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1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5조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각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간 자동 연장한다.

제6조(기타사항)

1.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의 시행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구대학교”와 “민커뮤니케이션”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본 협약서에 따른 협력과정상 각 당사자가 담당할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서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각 당사자는 협약서의 유효기간 중에도 본 양해각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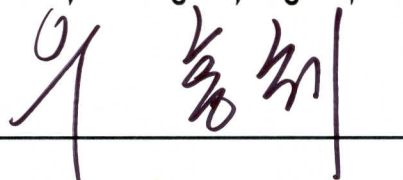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가진다.

2012년 5월 25일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학 장 우 흥 체



주식회사

민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김 병 민

